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2009. 3

류건식 · 김동겸



CEO Report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2009. 3

류건식 · 김동겸

보 험 연 구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 중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 I. 검토배경 ···································· |
|--|
| Ⅱ. 퇴직연금 운용과 근로자 수급권 보호 2 |
| 1. 퇴직연금 상품구조와 운용체계 2 2. 퇴직연금 운용과 수급권 보호 4 |
| Ⅲ.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 10 1. 가입형태별 ···································· |
| 4. 보상한도 15 |
| IV. 종합평가 및 정책과제 17 1. 종합평가 17 2. 정책과제 19 |
| <참고문헌> 20 |

I. 검토배경

- □ 지난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미흡 등 퇴직연금제도상의 제반문제**로 인하여 선진국에 비해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2008년 12월 현재, 전체 5인이상 사업장의 10%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영국 51%, 미국 56%의 퇴직연금 가입률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해 기업(사용자) 및 금융기관 도산 시 **퇴직연금에 예금보험요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 의가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예금보험제도 대상에서 퇴직연금은 제외되어 있으나 예금 보험제도 대상에 퇴직연금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 어지고 있음.
- □ 따라서 퇴직연금의 운용특성을 고려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에 퇴직연금에 대한 예금보험요 율 적용의 타당성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퇴직연금 유형별로 수급권보호 문제를 살펴보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산시점 기준으로 수급권보호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본 연구는 퇴직연금 운용과 근로자 수급권 보호와의 관계를 모색하고, 가입형태, 계약형태, 예보료율, 보상한도 측면에 서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과 정책과제를 제시함.

Ⅱ. 퇴직연금 운용과 근로자 수급권 보호

1. 퇴직연금 상품구조와 운용체계

가. 퇴직연금 상품구조

- □ 확정급여형은 사용자인 기업의 지시에 의해 적립금이 운용되지만,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하는 특징을 지님.
 - 확정급여형은 운용상의 모든 리스크를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 하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운용상의 모든 리스크는 근로자 스스 로 부담함.
- □ 따라서 확정급여형은 사용자인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수급권 보** 호문제는 기업도산시 발생
 - 확정기여형은 기업 도산시 수급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근로 자가 운용지시를 한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수급권 보호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표Ⅱ-1> 퇴직연금 유형별 수급권보호장치 비교

| | 도산 주체 | 근로자손실 | 수급권보호제도 |
|-------|---------|-------------|-----------|
| 확정급여형 | 사용자 | 발생 | 지급보증제도에 |
| | (기업) | (적립금 미납부 등) | 의해 수급권보호 |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사업자 | 발생 | 예금보험제도 등에 |
| | (금융기관) | (원리금보장상품) | 의해 수급권보호 |

- □ 이러한 특성으로 확정급여형은 예금보호제도가 아닌 퇴직연 금제도 자체에 의해 수급권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 도록 퇴직급여보장법에 수급권 보호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확정기여형은 완전적립된 상태로 운영된다 해도 적립금을 운영 하는 금융기관 도산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 사용자가 관여하여 보전해 줄 책임 자체가 없으므로 별도의 수급권보호장치가 검토 될 필요가 있음.

나. 퇴직연금 운용체계

- □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차원에서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원리금보장 상품 1개 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 즉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복수의 운용방법(상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또한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기업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기관과의 자산관리계약은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 * 신탁계약 : 적립금이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적금과 실적 배당상품으로 운용
 - ** 보험계약 : 금리연동형, 이율보장형 등 원리금 보장형 운용방법과 실 적배당형 운용방법으로 운용
 - 이처럼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계정을 통해 퇴 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은 퇴직연금상품의 특수성

및 퇴직연금가입자의 수급권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도록 함.

2. 퇴직연금 운용과 수급권 보호

가. 사전적 수급권 보호

- □ 수급권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퇴직급여보장법에는 다양한 수급권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장치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 업자의 도산을 기준으로 사전적 수급권보호와 사후적 수급권 보 호로 구분됨.
- □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일반 금융상품보다 강화된 **사전적 수급 권 보호장치를 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에 별도로 규정함.

<진입단계>

□ 일정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실금융** 기관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음.

- * 재무건전성 요건 : 자산운용사(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150%이상) 보험사(지급여력비율 100%이상), 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이상), 증권사(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
- ** 인적 요건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 요원 등 필요인력 확보
- 모든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 또한 확정기여형 원리금보장 상품 취급시에는 **일정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 획득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구함.

<운용단계>

- □ 퇴직급여보장법은 확정급여형을 운용하는 사용자에게 엄격한 연금재정 건전성 검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수탁자책임을 부여함.
 - 연금재정의 건전성 검증기준 : 최소적립금이상의 적립금의무화, 적립금 과부족시 적기시정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운용단계에서의 수급권보호 강화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에 충실의무, 신의의무 등을 부여하여 퇴직연금 운영을 저해하 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함.

<표II-2> 사용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탁자 책임

| 구 분 | 수탁자책임관련 사항 | 관련근거 | |
|--------------------|--|-----------------------------|--|
| | 근로자 교육실시의무 | | |
| 사용자 | 금지의무 ・ 근로자이익 상반행위 금지 ・ 권리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 퇴직연금제도 운영저해 금지 | 제 32조 (사용자의 책무) | |
| 퇴직연금 사 업 자 |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 | |
| | 자산관리계약체결 거부금지 | 제 33조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무) | |
| | 가입자손실보전금지 | | |
| | 특별이익 제공금지 | | |
| | 가입자정보 제공금지 특정한 운용방법제시금지 | | |

- □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금 융당국의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을 통해 퇴직연금이 원활히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있음.
 - 또한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운용중단 명령, 퇴직연 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계약 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 반상품에 비해 견고한 수급권보호수단을 마련함.

< 표 | 1-3 > 사용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

| Ŧ | 구 분 수탁자책임관련 사항(감독) | | 관련근거 | |
|-------------------|--|--|---------|---------|
| 보고 및 조사 | |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의 실시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의 출석을 요구 | | |
| | | 기업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해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 | ni ai a | |
| 사용자 | | 사용자가 관계법령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 | 법 제 (| 35全 |
| 시정 | , ,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단 명령 | | |
| 조치 퇴직연금 사업자 | 이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 | | | |
| | 사업자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명령 | | |
| 퇴직연금 폐지·중단 | | 사용자의 부담금미납부 또는 사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연금이 폐지되거나 운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중단이후의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근로자에 지급 | 법제 | 36圣 |

나. 사후적 수급권보호

- □ 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인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 우** 선변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수급 권이 보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도입으로 근로자가 기업 도산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기업 대신 지불하도록 규정함.

<표Ⅱ-4> 사후적 수급권 보호 관련 규정

| | 퇴직금 우선변제 | 임금채권보장기금 |
|------|----------------|------------------------------|
| 근퇴법 | 제 11조 | 임금채권보장법 8조 |
| 보상범위 | 최근 3년분에 한정 | 최근 3년분, 상한액 설정 |
| 적용대상 | 퇴직연금제도 적용 | 퇴직연금제도에도 적용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
| 특 징 | 사업주 재산이 있을시 지급 | 연금지급보증제도 기능 일부 담당 |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등 선진국은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일 반적으로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의해 연금지급을 법적 으로 강제화하고 있음.

<표 II -5> 선진국의 연금지급 보증제도

| 운용주체 | 정부기관 | 민간기구 |
|------|------------------|---------------------------|
| 해당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일본 |
| 운영방식 | 인수방식(Take-over) | 판매방식(Buy-out) |
| 지급보장 | 국가가 직접보장 | 민영보험으로 해결 (최종 책임은 국가) |

-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의 가입을 임의가입방식형태로 취하고 있는 국가는 연금지급보증공사(PBGC) 등과 같은 연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연금지급을 의무화함.
- 이에 반해 독일, 스웨덴 등처럼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대체하는 국가는 민영보험사에서 연금을 구입하는 방식(Buy-Out) 방식으로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함.

- □ 현재 미국 등과 같은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등과 같은 협의의 연금지급보장장치를 통해 사후적 수급권보호는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럼에도 기업 도산시 완전한 수급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 에서 궁극적으로 미국식 연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 필요성 존재.

Ⅲ.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1. 가입형태별

- □ 확정급여형은 적립금 운용성과가 기업에 귀속되는 기업예금 성격이므로 정해진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운용성과가 직접 귀속되지 않는 특징을 지님.
 - 따라서 기업예금 성격의 확정급여형에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소액예금자보호라는 예금보험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그 이유는 확정급여형에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리스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 □ 따라서 확정급여형은 예금보험제도 적용보다 채권자 우선변 제제도 및 지급보증제도 등과 같은 지급보장장치가 근로자 수급권보호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확정급여형은 채권자 우선 변제제도의 확대적용 등을 통해 사용 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즉 수급권 보호를 금융기관이 아닌 사용자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운용성과가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점에서 **개인예금성격의 예금보험제도 기본틀** 범위내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의 운용성과가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제

한적 적용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확정기여형은 완전 적립된 상태로 운용되어도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도산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 사용자가 보전해 줄 책임이 없으므로 별도 보호장치가 필요할 것임.

<표Ⅲ-1> 가입형태별 수급권 보호 대책 검토의견

| | 사전적 수급권보호 | 사후적 수급권보호 |
|-----------------------|--|--|
| 확정급여형 (기업예금 성격) | - 수급권 보호기능의 강화 ·재정건전성검증, 적기시정조치 강화 ·정보공시 및 운용 감시기능제고 | - 현행 수급권보호제도보완(단기) · 채권자우선변제제도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 연금지급 보증제도 도입(장기) |
| 확정기여형 (개인예금 성격) | - 수탁자 책임의 명확화 ·충실의무, 신의성실의무 등 | - 예금보험제도 제한적 적용 · 원리금 보장 부분에 한정 |

- □ 따라서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개별수급권을 인정, 예금보험 제도 적용이 검토되지만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지급에 대한** 최종책임이 기업에 있어 수급권을 인정하는데 한계가 존재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명목상 소유주는 신탁계약의 경우 자산 관리기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개별수급권이 인정됨.
- □ 확정급여형은 기업도산으로 근로자에게 연금급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개별수급권 문제는 발생할 수있으나 금융기관 도산과 개별수급권과는 상관관계가 존재하

지 않음.

- 그 이유는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일대일 계약인 계약형 지배구조 형태이므로 기업재무력을 고려한 자산배분, 운용기관 선정 등이 전적으로 기업 책임하에 이루어져 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개별 수급권을 인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임.
- 특히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근로 자의 개별수급권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연금지급 보증제도 도입여부는 주무당국에서 결정할 사항임.
-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발전을 전제로 할 때, 수급권 보장문제는 예금보호차원이 아닌 기금의 건전성 보장차원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 선진국은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퇴직연금제 도에서의 예금보호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지님.

2. 계약형태별

- □ 퇴직연금 신탁계약은 예보적용이 필요 없는 수익증권 등 다양한 운용방법을 편입하므로 상품제공기관 입장에서 원리금 보장에 해당하는 예·적금 등에 한해 보호하도록 함.
 - 신탁계약 그 자체를 상품단위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신탁계약 에 편입되는 운용방법 중 원리금보장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예ㆍ 적금으로 제한함.

- □ 퇴직연금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형(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과 실적배당형이 보험세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단일계약으로 보험계약 자체가 하나의 상품처럼 운용됨.**
 - 따라서 예보적용을 위해 보험계약을 원리금보장과 실적배당계약 으로 이원화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는 동일 보험사와 복수의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함.
 - 또한 운용방법을 변경할 경우 단순한 보험세목의 변경이 아닌, 계약해지 후 신규계약의 체결이라는 번거로운 절차 및 계약해지 로 인한 패널티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

<표Ⅲ-2> 계약형태별 예금보험제 적용 검토의견

| | 계 약 형 태 | 예금보험제 적용 |
|---------------|---|----------------------------|
| 계약형태별 예보적용 | - 단일계약 형태 유지 ・보험계약이원화 시, 계약체결상의 비효율성 및 근퇴법등 관련법규 개정 수반 감안필요 | 원금보전부분에 대한 부분 보호 |

- □ 따라서 보험계약이 원리금보장과 실적배당계약으로 이원화하는
 는 경우의 비효율성을 고려, 단일계약 구조를 유지하면서
 원금보전 부분에 대한 부분보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이유는 보험계약이 비록 단일계약이지만 계약체결 형태는 세 목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운용방법을 설정하고 있으며, 각 세 목별 적립금의 구분 역시 명확하기 때문임.

3. 예보료율

- □ 보험상품은 보험의 기본적 구조로 인하여 **자산관리기관과 상품제공기관이 동일한 일체형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이로 인한 손익구조 개선효과는 존재하지 않음.
 - 자사예금을 제시하고 있는 은행의 구조와 동일하게 일체형 구조 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효과는 존재하지 않음.
- □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에 대해 예보료율 적용시, 제도상품인 퇴직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은행, 보험사, 등 모든 상품제공기관에 대해 동일한 예보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는 금융권별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제도형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 장기적으로 별도 예금보험요율체계를 가져갈 필요성이 있음.

<표Ⅲ-3> 확정기여형 예보료율 적용 검토의견

| | 예보료율 적용 | |
|-------|---|--|
| | 1 안 | 2 안 |
| 확정기여형 | - 금융권간 동일한 예보료율 적용(장기) · 제도형 상품 특성 반영 | - 별도 예보료율 적용(장기) · 보험사의 신탁계약 공조원활, 인터페이스 표준화작업 |

□ 즉, 퇴직연금은 다양한 금융상품중 가입자가 선택하고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제도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별 도의 예보료율체계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물론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낮은 예보료율을 적용할 경우 동일 금융기관내 상이한 상품에 대해 차등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상 품별 적정 예보료율 산정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주장이 제기될 수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보험회사가 이미 신탁계약과의 공조를 통해 자사 보험뿐만 아니라 예금, 수익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위한 시스템 표준화작업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미흡함.

4. 보상한도

- □ 퇴직연금의 경우 현행 예보법에 의해 보호받을 경우 예금주 1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만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한도 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적립이 이루어지고 직장이동시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퇴직급부 이연이 용이하므로 여타 금융상품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운용됨.

<표Ⅲ-4> 퇴직연금 보상한도 검토의견

| | 현 행 | 검 토 |
|------|---------|----------------------------------|
| 보상한도 | 5,000만원 | - 기존보호한도와 별도(장기) ·퇴직연금 특수성 감안 |

□ 이에 따라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의 수급권보장 및 강제 저축 적 성격을 고려, 일반예금과는 별도의 한도를 인정하는 것 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존재함.

Ⅳ. 종합평가 및 정책과제

1. 종합평가

-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기능 강화는 중요함.
 - 이에 따라 근로자 수급권보호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에도 예금보 험제도를 적용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 그럼에도 퇴직연금에 예보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사전에 퇴 직연금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장 합리적인 적용 방법** 이 무엇인지를 보다 심도 있게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퇴직연금 예보료율 적용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공정한 시장경쟁여건 조성이라는 예금자보호제도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퇴직연금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즉,
- □ 첫째, 퇴직연금 취급기관이 다르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퇴직 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감독규정에 의한 동일 규제를 받는 제도형 상품이라는 점임.
 - 그 이유는 보험, 은행, 증권 등 업무영역별로 구분하고 있는 금 융권별 특성이 퇴직연금계약에는 존재하지 않고 보험계약의 고 유특성인 위험보장기능이 없기 때문임.
 - 퇴직연금 계약형태를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으로 특정한 것은 제도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금융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임.

- 둘째, 확정급여형은 적립금 운용성과가 기업에 귀속되는 기업 예금성격이므로 기업예금성격에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것 은 소액예금자보호라는 예금보험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임.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제도의 적용방 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존재함.
 - 확정급여형에서 금융기관 파산위험의 본질을 "금융기관 파산
 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가능성"으로 규정하여 확정급여형은 일
 반 기업보험성격으로 간주함.
- □ 셋째, 확정기여형은 기본적으로 예금보험제도의 기본틀 내에서 적용하되, 장기적으로 금융권간 동일한 예금보험요율, 또는 별도 예금보험요율체계를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임.
 - 그 이유는 금융권간 동일한 제도형 상품에 현행 금융권역별 차 등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논리에서도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임.
- □ 넷째, 퇴직연금 예금보호방안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훼손되지 않도록, **퇴직연금제도 틀 속에** 서 예금보험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임.
 - 그 이유는 퇴직연금제도가 안전하게 자리 잡고 활성화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예금보험의 존재가치가 있으며 예금보험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임.

2. 정책과제

- □ 기본적으로 현행 채권자 우선변제도의 확대적용, 연금지급보 증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업중심의 근로자 수급권보호가 이 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노동부 등 주무당국에서는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과 관련된 종합적인 로드맵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미·일 등 선진국에 비해 기업 도산에 따른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 조속한 시기에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정비가 요구됨.
- □ 또한 사전적 수급권보호차원에서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 자에 대한 감시기능장치(보고·신고의무 강화)를 강화하고 적립비율중심 연금재정 건전성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감독당국에 의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금운용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3자적 감시기능장치를 시장의 자율기능차원에서 마련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 특히 제도상품의 성격을 지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장기적으로 금융기관간 **동일 예금보험요율 또는 별도예금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논의가 요구**됨.
 - 이 경우 우리나라의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 등)을 고 려하여 예금보험요율의 적용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문헌

김인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수급권보호를 위한 법 정책 방향 : 미국 과 일본의 적격기업연금법제를 참고로」, 노동법연구, Vol.7., No.1.1998 노동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008.8.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8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설명자료」, 2008.8. 류건식, 「기업연금 지급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리스크관리연구』, 한국 리스크관리학회, Vol.12., No.1., 1999. 류건식·손성동,「기업연금의 도입에 따른 수급권보호제도 정립방안」,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학회, 제14권 제2호, 1998.12. 류건식·이경희,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규제 비교분석」, 『보험개발 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53호), 보험연구원, 2008.3. 이민환,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문제와 향후과제」,2005년 동계 금융심포지엄 자료, 2005.11 류건식·정석영, 「퇴직연금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대한경영학 회지』, 제21권 제2호 (통권67호), 대한경영학회, 2008.4. 申文植・柳建植・李鳳周,「韓國型 退職年金制における 受給權保護と 向後の 課題」, 保險學雜誌 第593号, 日本保險學會, 平成 18年6月, 2006.6. World Bank , " Republic of Korea ; The Korean Pension System at a Crossroads", Report No 20204-KO, May 10. 2000. ____,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2005.5 OECD, Regulating Private Pension Schemes; Trends and Challenges, OECD Private Pensions Series, 2002.

, Pension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ies, 2007.

저 자 약 력

류 건 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계리사 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재무연구실장)

(E-mail: keon@kiri.or.kr)

김 동 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현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dgkim@kiri.or.kr)

CEO Report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발 행 일 2009년 3월 일 발 행 인 나 동 민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2268 - 0676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재무연구실 (☎368-4431)로 하여 주십시오.